광명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

제정 1981. 7. 1 훈령 제 24호 개정 1998. 10. 2 훈령 제179호(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) 2008. 6. 16 훈령 제273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) 일부개정 2018. 7. 31 훈령 제399호(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)

- 제1조(목적) 토석, 모래, 자갈 등(이하 "골재"라 한다)의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 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임무) ① 허가 구역 관할 동장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임무를 수행한다.
 - 1. 하천부지 무단 점용 단속
 - 2. 기성제(제방)묘적물 설치, 가축방사, 식수 단속
 - 3. 불법 공작물 설치 단속
 - 4. 흙, 모래자갈, 돌, 잔디 등의 무단 채취
 - 5. 제반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
 - 6.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동에서는 매주 3회(화, 목, 토) 점검하고 시에서는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3조(근무 및 단속)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점검자를 지정한다.
 - ②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자로부터 입증자료(자인서)를 징취 보관한다.
 - ③ 점검 결과는 늦어도 점검 익일까지 소속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.
- 제4조(증명 등의 휴대) ① 점검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증명(공무원증 또는 감시원 증)을 항상 휴대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점검자는 점검표 자인서 사진기 등을 휴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현장에서 징취하여야 한다.
- 제5조(보고) 골재 채취 허가장소 감시결과 허가조건위반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

광명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

시는 입증자료와 의견서첨부 허가권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1998. 10. 2 훈령 제179호,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〉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훈령 제399호,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〉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[별지 제1호 서식] 〈개정 2018. 7. 31〉

골재재취허가장소 점검표

					담 5	당	과	장	부시	장 시] 장	. 결		
												재		
①허가 장소														
②허가자성명														
③허가 면적				<u>4</u> 8	il 7	ነት	량							
⑤허가 품명				67	⑥점검자직성명									
	점	검	사	항					점검결과		— 日]	7		
		TI		76					0	×		14		
①감시초소설치여부														
②골재 채취 지역의 경계표시 설치여부														
③토적 구간의 우선채취 여부														
④심도는 1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웅덩이가 생기														
지 않도록 고루 채취하는 지의 여부														
⑤유심 변동 또는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골재의 적치행위를														
금지하는 여부														
⑥하류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채취하되 하천중심에서														
양안으로 점차 확대 채취하는지 여부														
⑦채취 후 산토석에 대하여는 고수부지 토적예정지의 당일														
로 정리하는지 여부														
⑧골재채취 허가 지역임을 표시하는 고착된 황색기를 설치														
하였는지 여부														
⑨일출전과 일몰 후에 채취된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														
⑩허가표시판을 채취구역 입구에 설치하였는지 여부														
⑪반출증은 지정된 차량 1대 1회에 사용하였는지 여부														
⑩골재 반출로는 지정하였는지 여부														
③기타 조건 ㅎ	취가 위병	반 여부												
⑭기타 특기사항 및 감시자 의견														